

農地使用制限과 山林苗圃

農林新聞社編輯部

『발사스』人口論에 의하면『人口가 食糧供給을 超過할때 人間 스스로가 自發的으로 그 均衡을 회復시키지 못하는 경우, 自然이 食糧과 人口의 均衡을 회復시키는 잔인한 攝理를 가졌다』고 했다. 이러한 自然法則은例外없이 適用되어 현재 地球上에는 5千萬의 人口가 饑餓상태에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地域에서는 每週 약 1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하더라도 近年 暴發의 人口增加와, 또 지난 1년동안만 하더라도 약 8億달러에相當하는 糧穀을導入充當했다는 食糧事情의 客觀的 與件은 食糧自給이 至上課題처럼 登場해야만 되게 되어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농수산부는 行政措置로 農耕地를 「絕對農地」와 「相對農地」로 區分하고 「絕對農地」內에는 벼, 보리 農事를 제외한 多年生 植物栽培과든지 牧草栽培 등을 禁하고 있으며, 한결음 더 나아가서는 絶對農地, 相對農地 할 것 없이 農耕地內에는 主穀作物 이외의 작물재배는 制限내지는 抑制할 方針아래 새로운 農地法 制定도 서둘고 있다는 消息은 이미 紙上을 통해 알고 있는事實이다.

농수산부가 취하고 있는 이 같은 일련의 措置는 食糧自給自足이라는 大業을 이루하기 위해서도 누구나 歡迎할 일인 것이며, 共感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農地使用을 制限내지 抑制하는 데에는 몇 가지 留意할점이 있다고 보아 여기 우리의 見解 몇 가지를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指摘하고자 하는 것은 現時點에서 絶對農地內에 벼, 보리 이외의 他作物栽培를 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行政措置에 不過할뿐, 農耕地所有者가 農地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제14조에 依據 市長·郡守에게 栽培作物變更 申告를

하고 他作物을 栽培할 경우 法의 保護를 받게돼 있다는 點에서 行政措置가 아무리 國家의으로有利한 措置라 할지라도, 法을 凌駕할수 없기 때문에 實行面에서 實地 一線에서는 數많은 物議를 惹起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둘째, 絶對農地에서의 山林苗의 養苗는 現實化하자는 것이다. 현재 농수산부는 行政措置로 絶對農地內에 山林苗圃 施業을 禁止시키고 있으나, 現行法上으로는 申告로써 山林苗圃施業이可能하지만 法以前에 國民 모두가 國家의 重要施策에 順應함이 마땅하다고 보나, 絶對農地가 아니면 生產이 不可能한 樹種이 많다.

오리나무 成苗와 낙엽송, 삼나무, 편백幼苗는 항상 自由로운 灌·排水가必要할 뿐만 아니라, 自由로운 灌排水가可能한 苗圃라 하더라도 連作을 할수 없는 技術的 特性때문에 現在 絶對 農地가 아니면 이의 生產이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樹種의 政府指定生產分의 作付面積은 全 農耕地에 對하여 차지하는 比重이 极히 적을 뿐만 아니라, 山林造成事業이 旱水害防止는 물론 土砂流出防止로 農耕地를 保護하고 上流 水源涵養 등으로 農產物增生에 誘發生效果가 크다는 點과 年間 우리나라 木材輸入額이 4億弗에 達하여 糧穀導入 못지않게 輸入比重이 높아서 林產資源造成이 時急하다는 點등을 감안하여 絶對農地가 아니면 生產이 不可能한 樹種에 限하여 絶對農地使用을 許容하는 길을 터 놓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措置의 한 方便으로는 農地使用制限이 行政조치이던 法의 제약이던 管束, 그 但書에 政府山林事業을 위하여 市道知事が 山林苗木生產者에게 施業樹種, 數量面積을 指定함으로써 農地使用을 許容하는것으로 看做處理하는 것도 効果的인 方法이라고 할수 있겠다.

셋째, 農地使用制限에 대하여 附言코져 하는 것은 觀賞樹木栽培에對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經濟發展과 더불어各種建設工事が 이루어지고 따라서 造景事業擴充으로 從前에 市場性이 없던 造景觀賞樹가 점차 價值가 認定되고 需要가 늘어나 價格自體가 講貴하는 한편 그 連鎖反應은 이의 栽培를 위한 假需要로 인해 觀賞樹苗價格까지 부채질함으로써 觀賞樹栽培面積이 늘어나고 있다. 京鄉各地를 돌아보면 門前沃畠은 물론 山間 논밭까지도 無秩序하게 그 作付面積이 늘어나고 있다. 이 觀賞樹가 우리에 必要 없는 것은 아니나, 當面한 食糧事情이나 國家的見地에서 볼 때는 不急한 것이므로 農耕地內에서의 觀賞樹栽培는 극도로 限制을 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며, 또 果樹도 食糧解決에 큰 比重을 갖지 못하는 것들은 農耕地栽培를 抑制해야 하고, 食糧解決과는 無關하나 財貨價值가 充分하여 그栽培를 장려할 만한 것들도 논밭栽培에서 山地栽培로 方向轉換을 해야 된다고 본다. 이를테면 韓成(난정이) 사과인 경우 專門家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山地栽培가 可能하다고 들고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漸次 農地使用을 制限해야 할 것이다.

다만 結論的으로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農地使用制限은 철저하게 되되, 政府指定生產 山林苗木生產같이 公益내지는 公共性이 크고, 技術의 으로 農地使用을 制限해서 안되는 것들은例外規定을 두어야만 한다고 본다.